

## Big4 감사품질의 우수성은 모든 규모의 기업에 적용되는가?\*

황인태(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ithwang@cau.ac.kr)

강선민(제1저자)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원  
(smkang@keri.org)

정도진(공동저자)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accprok@hotmail.com)

본 연구에서는 회계감사시장에서 감사품질은 감사인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서비스 공급자인 감사인과 서비스 수요자인 기업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DeAngelo(1981) 이후 감사인의 규모 등이 회계감사품질의 대용변수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대용변수가 실제 회계감사품질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사인의 명성과 규모에 따른 감사품질의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직·간접적인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즉,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Big4의 감사품질이 다른 감사인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감사품질의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때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연구는 대형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피감사기업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우수하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나, 이와 같이 대형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모든 규모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기타 감사인에 비하여 우수하다는 가정은 너무 강한 가정이라고 생각된다. 감사품질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감사인을 Big4와 Non-Big4로 이원화하여 대형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피감사기업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우수하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은 국내 감사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이러한 연구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국내 회계감사시장에서 감사인간 감사품질의 차이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서비스의 수요자인 상장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달할 정도로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존재하며, 이러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Big4의 시장점유율이 57%로 미국 등에 비하여 낮은 실정이다. 더욱이, 감사인의 경우 다양한 법적 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며, 법적형태 및 규모에 따라 피감사기업의 규모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각 감사인은 차별화된 주력감사시장에서 전문성을 형성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 감사시장의 상황이 감사품질에 대한 선행연구가 일관되게 증명되지 않은 원인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회계감사시장에서 감사서비스 공급자인 감사인과 감사서비스 수요자인 기업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회계감사품질이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을 자산 규모별로 5단계로 구분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사인에 변화가 있는가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수입비중이 제한적이고 조직형태에 한계가 있는 감사반의 경우 회계법인에 비하여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감사반의 감사품질이 회계법인에 비하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500억 미만의 중소 상장기업의 경우 Local-Big과 Local-Small이 감사한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Big4가 감사한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적어, Local-Big과 Local-Small의 주력감사시장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Local Big과 Local Small의 감사품질이 Big4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Big4가 다른 회계법인보다 질 높은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피감사기업은 5,000억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주력감사시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각 감사인마다 차별화된 주력감사시장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감사환경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최적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감사인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며, 국내 선행연구에서 모든 기업규모에 대하여 Big4 감사품질의 우월성이 일관되게 증명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주제어: 기업규모, 감사인규모, 감사품질, Big4, 재량적 발생액

논문접수일: 2007. 12      게재확정일: 2008. 11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1. 머리말

일반적으로 감사인의 규모 등이 회계감사품질의 대용치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대용치가 실제 회계감사품질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감사품질을 연구한 외국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Big4 감사인들과 같이 대규모의 명성이 높은 감사인들은 그렇지 않은 감사인들에 비하여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른 감사품질의 차이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Big4 감사품질의 우월성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에 외국과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원인을 규명하고 감사인간 차별적인 감사품질이 기업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Big4가 다른 감사인에 비하여 모든 규모의 기업에 대해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품질의 감사인 규모는 피감사회사의 규모와 비례하여 달라지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감사인의 명성 및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의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직·간접적인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즉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대부분 연구에서는 Big4의 감사품질이 다른 감사인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감사품질의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때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품질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감사인을 외국유명회계법인과 제휴한 대형회계법인(Big4)

및 기타회계법인(Non-Big4)으로 이원화하여 대형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피감사기업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우수하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은 우리나라 감사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문제점이 존재하여 감사인간 감사품질 차이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원인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회계법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법률을 제정하여 대형회계법인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였다. 반면 이러한 혜택을 향유하지 못한 감사조직은 스스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대형회계법인이 가지지 못한 자기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특화된 감사서비스 시장에서 자기만의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 수요를 충족시켜왔다.

우리나라는 감사서비스의 공급자인 감사인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에 제한을 두어 왔다. 또한 감사서비스의 수요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자산총액 500억 미만 기업이 전체 상장기업의 46.78%를 차지할 정도로 상장기업 내에서도 다양한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감사조직이 다양한 회계서비스 수요를 가진 기업들에 대해 자기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전하여 왔으나, 이러한 이질적인 감사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Big4와 기타(Non-Big4)로 구분한 후 Big4의 감사품질이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기타 감사인에 비하여 우수하다는 가정은 감사인을 너무 단순하게 이분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유명회계법인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대형회계법인들의 감사품질 우수성이 일관되게 증명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회계감사시장에서 공급자인 감사인과 수요자인 기업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회계감사품질이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규모 등에 따라 감사인을 Big4, Local Big, Local Small, 그리고 감사반의 4집단으로 구분하고 기업 역시 자산규모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한 후 감사인 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감사품질이 감사 업무수행에 있어 상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변화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즉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적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감사인 규모 등이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Myers et al.(2003)은 높은 감사품질은 경영자의 재무보고과정에서의 극단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회계선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낮은 감사품질은 극단적인 회계선택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묵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영자의 재량적인 재무보고결정에 따라 회계발생(accruals)이 나타나며 이러한 회계발생은 감사 품질을 적절히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을 감사 품질을 나타내는 대용치(proxies)로 사용하여, 감사인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이 높아지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결과 감사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감사인 규모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가설과 일치한다. 첫째, 감사반의 경우 모든 규모의 기업군을 대상으로 회계법인에 비하여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감사 품질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500억 미만의 중소 상장기업 감사시장에 있어 Local Big과 Local Small이 감사한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은 Big4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에 비하여 유의하게 적어 이는 Local Big과 Local Small이 중소 상장기업 감사시장에

서 보다 높은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5,000억 이상 대형 상장기업의 감사시장에서는 Big4의 감사품질이 다른 회계법인에 비하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규모에 따라 최적의 감사인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며, 동시에 감사인의 구분을 이원화(Big4대 Non-Big4)하여 Big4의 감사품질의 우수성을 검증하고자 했던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이 없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즉, Big4 감사품질의 우수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입증된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유의성이 없거나 기대와는 반대의 결과를 얻은 것은 우리나라 감사시장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서비스 공급자인 감사인을 이원화한 구분법과 감사서비스 수요자에 해당하는 기업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선행 연구의 연구결과와의 차이는 표본기간에 따른 기업들의 규모 분포 등이 달라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선행연구를 기술하며 제Ⅲ장에서는 가설을 설정한다. 제Ⅳ장에서는 표본의 선정과정과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Ⅴ장은 실증분석결과를 보고하고, 제Ⅵ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다.

## II. 연구배경

### 2.1 감사인의 피감사기업 규모에 대한 제한규정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 외감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감사인의 규모와 조직 형태에 따라 감사인

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규모에 제한이 있어 왔다. 1966년에 제정된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법의 보완과 회계법인의 신설을 이유로 1968년 1차 개정되었다. 따라서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1차 개정시 처음으로 법률로 규정되었다. 회계법인의 신설에 관한 주요골자는 공인회계사 단체를 법적조직으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동 공인회계사법에서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회계법인이 법률로 규정된 후, 공인회계사들은 정부의 외부감사제도 강화로 늘어날 업무량에 대비, 회계법인의 설립과 회계사 양성 등 기업공개에 따른 수용태세확립과 감사기구의 대형화를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따라서 정부의 기업공개와 외부감사제도의 강화방침에 따라 전국에 있는 회계사무소는 통합과 대형회계법인의 설립으로 대형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감사기구의 대형화 즉, 회계법인, 감사반의 대형화·전문화는 1980년 기업회계 감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시 강화되게 된다. 1982년과 1989년 사이에 공인회계사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1981년까지 존재했던 합동공인회계사반이 폐지되고 개인감사인, 그리고 합동회계사무소라는 공인회계사조직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감사는 회계법인, 합동회계사무소, 개인감사인으로 구분되었다. 1968년 공인회계사법 1차 개정 당시 회계법인은 사원을 5인 이상으로 할 것을 그 설립조건으로 하였으나, 이후 회계법인은 5인 이상의 사원을 포함한 14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1980년대에 회계법인간에 많은 합병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감사인의 업무수입 준칙 개정으로 자산규모에 따른 감사인의 업무제한 규정이 감사인의 규모에 따라 감사업무에 차등을 두었기 때문이다. 감사인의 업무수입준칙 및 시행세칙은 각 감사인별 수입한도 및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대상회사의 자산규모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인의 조직점수 및 개인점수 한도에 따라 감사대상 수입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1982년 2월 25일 제정된 '감사인의 업무수입준칙'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그 주요 변경내용을 요약한 것이 <표 1>이다.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외감법에 의한 강제 외부감사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감사인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에 제한이 있어 왔다. 감사규모에 있어 이러한 제한 규정은 2003년 6월 외감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회계법인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회사의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 시장기능에 맡기고 있다.<sup>1)</sup> 다만, 감사반의 경우에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에 제한을 두어 500억원 미만의 회사에 한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에는 감사인과 회사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감사인이 선임된다. 그러나 감사인 지정과 같이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작은 감사인에게 대규모 회사가 지정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당해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지정대상 회사의

1) 다만 자산규모 8,000억원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는 소속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이면서 증권선물위원회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외국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표 1〉 감사인의 피감사기업규모에 대한 제한<sup>주1)</sup>

연도	구분	회계법인	합동회계사무소	개인감사인	감사반
1982-1984		제한 없음	1,000억 미만	40억 미만	-
1985		· 50인 이상: 제한 없음 · 50인 미만: 5,000억 미만	상동	50억 미만	-
1986-1987		상동	· 14인 이상: 1,000억 미만 · 14인 미만: 500억 미만	70억 미만	-
1988-1989		· 100인 이상: 제한 없음 · 50인~100인: 5,000억 미만 · 50인 미만: 3,000억 미만	상동	100억 미만	-
1990-1996		상동	1,000억 미만	-	200억 미만
1997-1998		· 100인 이상: 제한 없음 · 100인 미만: 8,000억 미만	-	-	300억 미만
1998-2000		· 100인 이상이고 외국 유수회계법인과 제휴: 제한 없음 <sup>주2)</sup> · 100인 이상: 8,000억원 이상의 금융기관 제외 · 100인 미만: 8,000억 미만	-	-	상동
2000-2003		상동	-	-	500억 미만
2003.6-현재		· 8,000억원 이상의 금융 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은 100인 이상 이면서 외국유수회계법인과 제휴한 법인	-	-	상동

주1) 1997년 이전에는 감사인의 업무수입준칙에 감사인별 업무수입한도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1997년 4월 이후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3년 6월30일 외감법 시행규칙 개정시 회계법인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회사의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8,000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외국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자산 규모에 따른 감사인요건을 정하였다.<sup>2)</sup>

이러한 지정대상 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른 감사인 요건을 살펴보면 회계법인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지정대상 회사규모에 제한이 없으나 중소기업법인의

의 경우 대기업 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다만, 종전의 감사대상 회사규모 제한과 다른 점은 자산규모 500억 미만 회사의 경우 8,000억 이상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지정대상에서 제외

2)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른 감사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종전에는 대형회계법인의 경우 감사할 수 있는 회사규모에 제한이 없었으나 중소형 회계법인의 경우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자산규모에 한도가 있어 대규모 기업을 감사할 수 없어 일반적으로 대형회계법인에만 유리한 규정이라는 비판을 감독당국이 수용한 것이다.<sup>3)</sup>

## 2.2 선행연구

감사인 유형간의 감사품질 차이는 여러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우선 감사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대용변수로 감사인의 규모(DeAngelo 1981), 감사시간과 감사보수(Palmrose 1986, Palmrose 1989, 최관과 백원선 1998, 권수영과 김문철 2001)가 사용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규모면에서 Big4 회계법인이 Non-Big4 회계법인보다 크고, 또한 Big4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이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더 높은 감사보수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은 결국 Big4와 Non-Big4로 나누어 감사품질을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감사인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외 기존 문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분방법은 Big4와 Non-Big4로 구분하는 것이다.

한편, 감사인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미국의 많은 연구들은 감사인 규모 즉 Big4 감사인과 Non-Big4 감사인간에 감사품질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이론적으로 DeAngelo (1981)는 많은 기업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회계법인 총수입에서 개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어느 한 기업의 부당한 회계처리를 묵인하는 대가로 그 기업을 계속 회계법인의 고객으로 유지함으로써 얻는 수익보다 회계감사품질의 하락으로 장기적으로 다른 잠재적인 고객을 잃어버림으로써 상실하는 수익이 더 크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로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개별 감사고객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증가하여 감사품질의 향상이 기대된다. 즉 대형회계법인의 경우 소형회계법인에 비하여 많은 고객회사들에 대하여 준지대(quasi-rents)를 가지고 있어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높은 감사품질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Teoh and Wong(1993)은 이익반응계수를 통하여 대형회계법인과 기타 회계법인간의 감사품질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Big8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의 이익반응계수가 유의하게

지정대상 회사의 자산규모	감사인의 요건					지정대상 회계법인
	소속공인 회계사수	설립경과 연수	매출 규모	손해배상 능력	외국회계법인과외의 제휴여부	
8,000억원이상	100인이상	10년이상	3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실질적 업무제휴	4가지요건 충족
3,000억원이상 8,000억원미만	50인 이상	7년 이상	10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실질적 업무제휴	4가지요건 충족
500억원이상 3,000억원미만	20인 이상	3년 이상	3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단순 업무제휴	3가지요건 충족
500억원미만	제한 없음					전체회계법인*

\* 전체 회계법인 중 8,000억원 이상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 제외

3) 감사반 소속 한 회계사는 "건설회사의 도급범위 등에서는 대형법인은 큰 공사를 하되 작은 공사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장형평제가 존재하고 있다"며 "소규모 회계법인과 감사반만 회계감사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2001년 10월 5일)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확대하여 Becker et al.(1998)은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으로 감사품질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Non-Big6로부터 감사받은 기업이 Big6로부터 감사받은 기업에 비해서 더 많은 금액의 재량적 발생을 계상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감사품질이 낮은 Non-Big6 회계법인일수록 경영자에게 회계처리에 관하여 더 많은 재량권(accounting flexibility)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Francis et al.(1999)은 Big6가 감사한 기업의 총발생액은 Non-Big6가 감사한 기업보다 더 많지만 재량적 발생액은 오히려 더 적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Big6가 그들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보수적인 감사기준을 적용할 유인이 있으며, 그만큼 감사품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감사시간을 이용하여 Big8 회계법인이 고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검증한 Palmrose(1989)는 Big8이 더 높은 감사보수와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Big8이 더 많은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독점력이 아니라 더 높은 감사품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감사품질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대형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기타 회계법인에 비하여 높은 감사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형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우수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증분석결과는 미국 등에 비하여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즉, 많은 연구들에서 Big4와 제휴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그렇지 않은 회계법인에 비하여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나종길과 최관(2003)은 영업현금흐름변수를 포

함한 수정 Jones 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한 경우 Big5 제휴법인의 피감사기업이 계상한 재량적 발생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회계제도개선과 감사품질이 기업들의 재량적 발생액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최정호(2005)는 회계제도 개선 이후 기업들의 재량적 발생액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Big5 감사기업과 Non-Big5 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 간에는 회계제도 개선 전후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감사시장에서는 Big5와 Non Big5간에 감사품질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감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효과적이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감사인규모에 따라 감사인을 좀 더 세분화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박종일·이명곤·원정연(1999)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감사인 유형별로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Big6와의 제휴여부(Big6), 국내 대형회계법인(Local Big), 그리고 국내 소형회계법인(Local Small)의 3집단으로 구분하여 차이를 검증한 결과, Local Small이 감사한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Big6와 Local Big이 감사한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적어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얻었다. 전기손익수정금액을 이용하여 감사인간 감사품질의 차이를 규명한 김문철과 황인태(1998)는 Big6제휴회계법인(Big6)과 국내대형회계법인(Local Big)의 피감사기업간 전기손익수정금액의 크기를 비교분석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Big6제휴회계법인과 국내대형회계법인의 피감사회사는 합동회계사무소(Local Small)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기업에 비해 전기손익수정금액이

유의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품질을 구분하는 기준은 Big6와 Non-Big6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감사인의 규모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정석우(1999) 역시 개인감사반과 합동회계사무소가 제공하는 감사서비스가 상대적으로 회계법인보다 그 품질이 낮다고 주장하였다.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통하여 Big6제휴법인과 국내법인간의 감사품질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최관과 백원선(1998)은 감사보수면에서는 Big6제휴회계법인과 국내회계법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감사시간과 관련해서는 Big6제휴회계법인이 국내회계법인보다 감사시간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Big6제휴회계법인이 감사의견표명에 있어 좀 더 높은 합리적 확신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권수영과 김문철(2001)은 우리나라에서도 감사품질에 따른 감사보수가 차등화되어 있으며, Big6제휴회계법인의 감사보수가 국내회계법인의 감사보수보다 높다고 주장하였다.

### III. 가설설정

#### 3.1 감사인의 구분

우리나라의 감사인간 감사품질 차이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감사인의 유형에 따른 감사품질차이를 검증함에 있어 기업규모 효과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기업규모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관계로 보아 단순히 자산규모 등을 회귀식에 포

함하여 이의 영향을 통제하고 있다. 즉, Big4의 감사품질이 다른 감사인에 비하여 모든 규모의 기업에 대해 우수한가에 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한 유형의 감사인이 모든 규모의 기업에 대해 다른 유형의 감사인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감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너무 강한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감사인의 형태나 규모 등에 따라 감사인의 주력 시장이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경제학적으로 볼 때 자기의 주력 시장에서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가정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DeAngelo(1981)와 Dopuch와 Simmunic(1982)에 의하면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피감사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기업이 감사인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따라서 어느 한 기업의 회계부정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그 기업을 고객으로 유지함으로써 얻는 수익보다 다른 잠재 고객을 잃어버림으로서 상실할 수 있는 비용이 더 크므로 독립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주장을 확장하면 만약 감사인의 규모 등에 따라 주력하는 감사서비스시장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각 감사인은 자기의 주력 감사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하여 좋은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최근 강선민·황인태(2007)의 연구에 의하면 자산총액이 70억을 초과하여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소규모 기업은 감사인이 Big4나 국내대형회계법인인 경우 외부감사효과가 제한적이나, 국내소형회계법인이 감사를 실시한 경우 재량적 발생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회계법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형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에 제한을

두었다. 따라서 중소형회계법인의 경우 법적으로 대형기업의 감사를 담당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자기의 장점을 살려 중소기업의 감사서비스시장에 주력하였다. 특히, 2001년 외감법 개정으로 회계법인의 설립이 완화되어 중소형 회계법인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sup>4)</sup>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사인이 100인 이상(50인 이상 100인 미만) 회계법인 수는 1996년 8개(2개)이었으며 10년이 지난 2006년에도 7개(5개)로 절대수에서 큰 변화가 없으나, 10인 이상 50인 미만 회계법인의 경우 1996년 1개에서 2006년 73개로 크게 증가하여 감사시장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감사인 조직형태는 1997년 이전까지

는 회계법인, 합동회계사무소, 감사반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중간단계로서 존재하였던 합동회계사무소는 감사인의 조직화측면에서 관련 법규(공인회계사법)의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이후 2001년 회계감사시장의 경쟁력과 회계감사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의 최저자본금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하고 공인회계사는 수는 20인에서 10인 이상으로 낮추는 등 회계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수가 1,000명으로 대폭 늘어나 2002년 회계법인의 숫자는 전년의 34개사 보다 21개사(약 60%)가 늘어나게 되었고, 2006년 현재 회계법인의 숫자는 86개사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2〉 연도별 감사인 현황

(매년 3월 31일 현재)

연도	회계법인					합동회계 사무소	감사반	합계
	10인미만	10인이상 50인미만	50인이상 100인미만	100이상	소계			
2006	1	73	5	7	86	-	286	372
2005	3	67	4	7	81	-	291	372
2004	2	57	4	7	72	-	287	359
2003	-	51	2	9	62	-	278	340
2002	3	42	2	8	55	-	276	330
2001	2	23	2	7	34	-	288	322
2000	5	18	3	7	33	-	275	308
1999	7	17	2	8	34	-	270	304
1998	7	14	2	9	32	-	264	296
1997	-	1	2	8	11	25	232	268
1996	-	1	2	8	11	25	211	247

4) 종전에는 회계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요건은 ① 2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② 5인 이상의 사원공인회계사, ③ 자본금 10억원 이상이었으나 2001년 3월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① 1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② 3인 이상의 사원공인회계사, ③ 자본금 5억원이상이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일반적으로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감사품질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에 의할 때 <표 2>에 근거하여 Big4를 제외하더라도 소속공인회계사수가 50인을 초과하는 회계법인과 그렇지 않은 회계법인간에는 규모면에서 동일한 회계법인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회계법인의 매출규모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회계법인을 Big4(5)와 Local로 이분하는 것보다는 시장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Local을 소속 공인회계사를 기준으로 대형회계법인과 소형회계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타당성하다고 생각한다.

법적·제도적 환경변화에 따라 중소회계법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기업도 크게 증가하여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Big4와 Local Big의 경우 10년간 피감사회사수가 2배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Local Small의 경우 5개에서 316개로 증가하여 2005년의 경우 전체상장기업의 23.6%의 감사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인의 감사품질에 관한 분석 시 최근 상당한 시장을 점하고 있는 중소회계법인을 기존의 국내 대형회계법인과 분리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2 감사주력시장의 구분

주권·코스닥상장법인을 자산규모별로 5단계로 구분한 후 각 자산규모별 감사인의 분포를 나타낸 <표 4>에 의하면 감사인의 형태에 따라 주력 감사시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Big4가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상장기업은 6,590개로 전체 감사시장의 57.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장점유율은 기업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규모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Big4는 500억 미만 기업의 감사시장에서는 47.8%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기업의 감사시장에서는 53.5%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전체 시장점유율 57.2%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00억 이상 5,000억 미만의 경우 65.9%, 5,000억 이상 1조 미만의 경우 79.5%, 그리고 1조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무려 86.3%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Big4의 경우 대규모 기업 감사서비스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Big4의 주력 감사시장은 대규모 기업임을 알 수 있다.

소속공인회계사수가 50인 이상인 Local Big이

<표 3> 표본기업의 감사인별·연도별 분포<sup>주1)</sup>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Big4	352	476	463	481	529	575	724	742	759	775	714	6,590
Local-Big	131	209	203	206	152	186	210	242	240	281	296	2,356
Local-Small	5	7	100	108	154	326	268	275	296	257	316	2,112
감사반외	46	102	37	55	60	63	37	24	22	18	11	475
합계	534	794	803	850	895	1,150	1,239	1,283	1,317	1,331	1,337	11,533

주1) Big4: 외국의 Big5와 제휴한 대형회계법인으로 삼일·안건·안진·영화·삼정회계법인

Local-Big: 등록공인회계사 수가 50인 이상인 국내회계법인으로 대주·삼경·삼덕·신우·신한·우리·화인경영회계법인

Local-Small: 등록공인회계사 수가 50인 미만인 국내소형회계법인

감사반: 감사반, 합동회계사무소 및 개인감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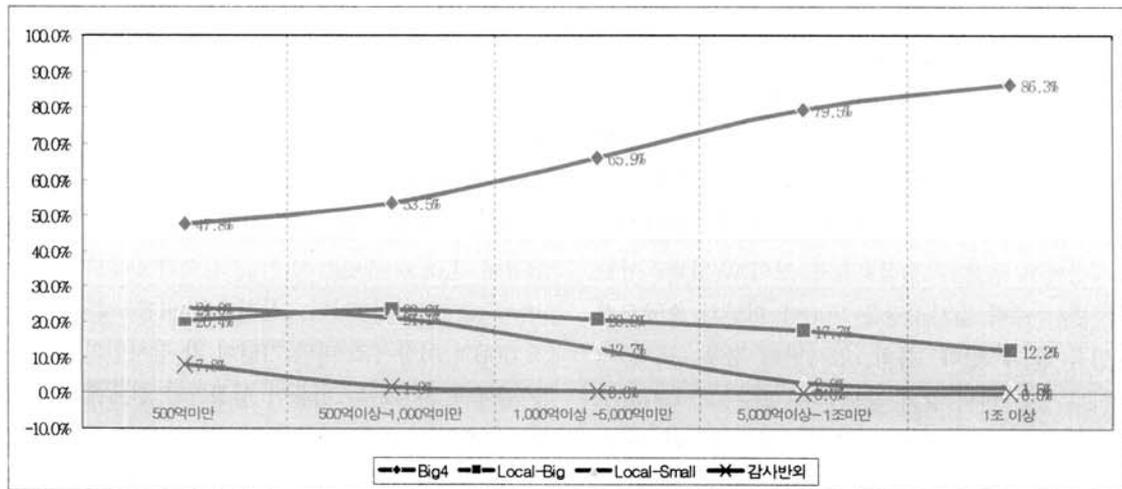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상장기업은 2,356개로 전체 상장기업 감사시장의 20.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500억 미만 기업의 감사시장에서는 20.4%,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피감사기업에서는 23.6%, 1,000억 이상 5,000억 미만의 경우 20.8%, 5,000억 이상 1조 미만의 경우 17.7%, 1조 이상 기업의 경우 12.2%를 차지하고 있다. 즉, Local Big의

시장점유율은 모든 규모의 기업군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5,000억 이상 대기업군보다는 중규모 기업 감사서비스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Local Big의 주력 감사시장은 중규모 기업임을 알 수 있다.

소속 공인회계사가 50인 미만인 Local Small의 경우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상장기업은 2,112개로 전체 감사시장의 18.3%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점

〈표 4〉 기업규모별 감사인의 시장점유율

자산구간(원) 감사인	500억미만	500억이상~ 1,000억미만	1,000억이상~ 5,000억미만	5,000억이상~ 1조미만	1조이상	전체
Big4	2,578(47.8%)	1138(53.5%)	1787(65.9%)	399(79.5%)	688(86.3%)	6,590(57.2%)
Local-Big	1,103(20.4%)	502(23.6%)	565(20.8%)	89(17.7%)	97(12.2%)	2,356(20.4%)
Local-Small	1,294(24.0%)	448(21.1%)	344(12.7%)	14(2.8%)	12(1.5%)	2,112(18.3%)
감사반외	420(7.8%)	39(1.8%)	16(0.6%)	0(0.0%)	0(0.0%)	475(4.1%)
합계	5,395(100%)	2,127(100%)	2,712(100%)	502(100%)	797(100%)	11,533(100%)



주1) Big4: 외국의 Big5와 제휴한 대형회계법인으로 삼일·안건·안진·영화·삼정회계법인  
 Local-Big: 등록공인회계사 수가 50인 이상인 국내회계법인으로 대주·삼경·삼덕·신우·신한·우리·화인경영회계법인  
 Local-Small: 등록공인회계사 수가 50인 미만인 국내소형회계법인  
 감사반: 감사반, 합동회계사무소 및 개인감사인

〈그림 1〉 기업규모별 감사인의 시장점유율

유율을 피감사기업의 자산구간별로 살펴보면 500억 미만 기업의 감사시장에서는 24.0%,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기업의 감사시장에서는 21.1%를 차지하고 있어 자신의 전체 시장점유율 18.3%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000억 이상 5,000억 미만의 경우 12.7%, 5,000억 이상 1조 미만의 경우 2.8%, 1조 이상 기업의 경우 1.5%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시장점유율 18.3%에 비하여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Local Small의 경우 5,000억 이상 대규모 기업에서는 시장점유율이 미미하며 1,000억 미만의 규모가 작은 기업 감사서비스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Local Small의 주력 감사시장은 소규모기업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반의 경우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상장기업은 475개로 전체 감사시장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500억 미만 기업의 감사시장에서는 7.8%로 전체 시장점유율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기업의 감사시장에서는 1.8%, 1,000억 이상 5,000억 미만의 경우 0.6%를 차지하고 있어 감사반의 경우 규모가 작은 소규모기업 감사서비스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감사반의 주력 감사시장은 500억 미만의 소규모기업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감사반의 경우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에 법적인 제약이 있어 500억 미만 기업 이외에는 거의 감사를 담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사인별 주력 감사시장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상장기업을 자산규모별로 5등분한 후 자산규모별 기업분포와 각 자산구간에 속한 기업들이 감사인의 감사대상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한

표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1조 이상 기업은 797개로 전체 상장회사 11,533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이다. 그러나 1조 이상 기업이 각 감사인의 감사대상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Big4가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1조 이상 기업은 688개로 Big4가 감사를 하고 있는 회사 6,590개의 10.4%를 차지하고 있어, Big4의 경우 1조 이상 기업을 평균보다 많이 감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조 이상 기업이 각 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Local Big의 경우 4.1%, Local Small의 경우 0.6%, 그리고 감사반의 경우 0%로 Big4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Big4를 제외한 감사인의 경우 1조 이상 기업이 상장기업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6.9%와 비교하여 볼 때 1조 이상 기업을 평균보다 적게 감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조 이상의 기업의 감사시장은 Big4의 주력감사시장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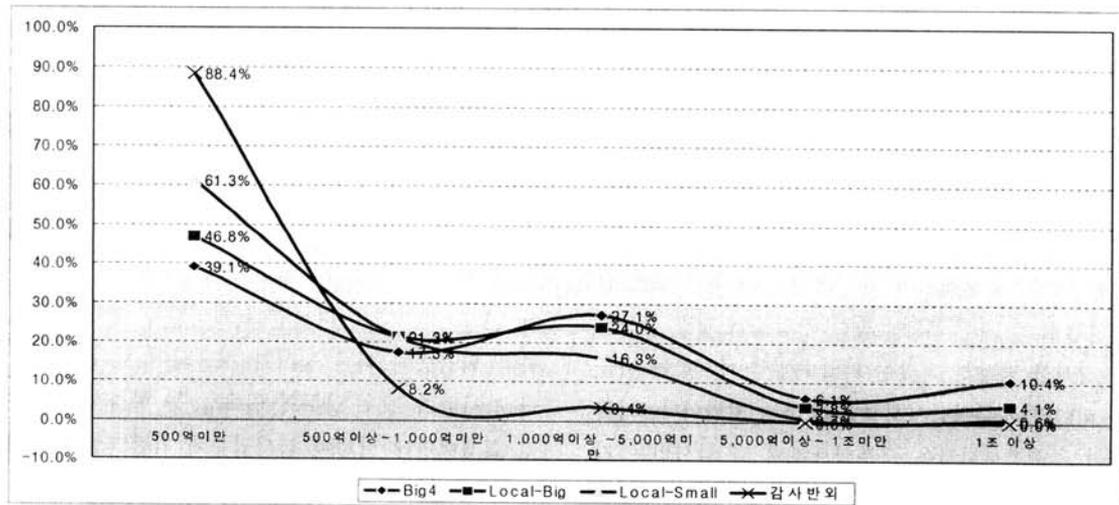
이러한 경향은 자산규모 5,000억 이상 1조 미만 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5,000억 이상 1조 미만 기업은 502개로 전체 상장회사 11,533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 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Big4의 경우 6.1%, Local Big 3.8%, Local Small 0.7%, 감사반 0%로 점유율에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Big4를 제외하고는 5,000억 이상 1조 미만 기업이 각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장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미달하여 5,000억 이상 1조 미만 기업의 감사시장 역시 Big4의 주력감사시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00억 이상 5,000억 미만 기업과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기업의 경우 어느 특정 감사인이 다른 감사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1,000억 이상 5,000억 미만 기업의 경우 Big4는 27.1%, Local Big은 24.0%, Local Small은 16.3%, 그리고 감사반은 3.4%로 1,000억 이상 5,000억 미만 기업이 전체 상장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23.5%와 비교하여 볼 때 감사반을 제외하고는 시장점유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기업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다. 즉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기업의 경우 Big4는 17.3%, Local Big은 21.3%, Local Small은 21.2%, 그리고 감사반은 8.2%로 1,000억 이상 5,000억 미만 기업이 전체 상장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18.4%와 비교하여 볼 때 감사반을 제외하고는 시장점유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규모의

〈표 5〉 감사인별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 비중

자산구간(원)	감사인	Big4	Local-Big	Local-Small	감사반외	전체
1조이상		688(10.4%)	97(4.1%)	12(0.6%)	0(0.0%)	797(6.9%)
5,000억이상~1조미만		399(6.1%)	89(3.8%)	14(0.7%)	0(0.0%)	502(4.4%)
1,000억이상~5,000억미만		1,787(27.1%)	565(24.0%)	344(16.3%)	16(3.4%)	2,712(23.5%)
500억이상~1,000억미만		1,138(17.3%)	502(21.3%)	448(21.2%)	39(8.2%)	2,127(18.4%)
500억미만		2,578(39.1%)	1,103(46.8%)	1,294(61.3%)	420(88.4%)	5,395(46.8%)
합계		6,590(100.0%)	2,356(100.0%)	2,112(100.0%)	475(100.0%)	11,533(100.0%)



주1) Big4: 외국의 Big5와 제휴한 대형회계법인으로 삼일·안건·안진·영화·삼정회계법인  
 Local-Big: 등록공인회계사 수가 50인 이상인 국내회계법인으로 대주·삼경·삼덕·신우·신한·우리·화인경영회계법인  
 Local-Small: 등록공인회계사 수가 50인 미만인 국내소형회계법인  
 감사반: 감사반, 합동회계사무소 및 개인감사인

〈그림 2〉 감사인별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 비중

기업 감사시장은 특정 감사인의 주력감사시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500억 미만기업의 경우 감사반이 다른 감사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즉 500억 미만 소규모기업이 전체 상장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8%이나 500억 미만 기업이 Big4 감사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1%, Local Big의 경우 46.8%, Local Small은 61.2%이나 감사반의 경우 감사하고 있는 기업의 88.4%가 500억 미만기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00억 미만 기업 감사시장을 주력감사시장으로 하고 있는 감사인은 감사반임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주력감사시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될 수 있다. 우선 각 감사인이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체 상장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하 '전체비중'이라 함)과 상장기업을 규모별로 구분한 후 각 규모별 감사시장에서 개별 감사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하 '자산별비중'이라 함)을 비교하여 자산별비중이 전체비중보다 큰 경우 해당 자산구간이 감사인의 주력 감사시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상장기업을 자산규모별로 구분하여 주력시장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우선 각 자산구간을 구분한 후 각 자산구간에 속한 기업들이 상장기업전체에서 차지비율을 구하고 개별 감사인별로 각 자산구간에 속한 기업들이 개별 감사인이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여 주력감사시장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주력감사시장을 구분함으로써 각 감사인은 자기가 비교우위가 있는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법률에 의거 감사인의 형태와 규모 등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에 상한을 두고 있었다. 감사할 수 회사의 규모에 제한이 없었던 대형회계법인과는 달리 대기업 감사를 담당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법인의 경우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감사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감사시장에서 대형회계법인과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감사기술을 개발하고 고객의 수요에 부응한 회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Big4는 기타 감사인에 비하여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높은 감사보수를 받아 명성에 맞는 감사품질을 유지한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Big4의 감사보수 수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지불할 수 있는 감사보수 등의 한계로 Big4가 특징을 발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우수할 가능성이 높다.<sup>5)</sup>

따라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감사인은 중소기업 감사시장이 주력감사시장이며 Big4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감사시장이 주력감사시장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감사인별 조직구조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외감법에 따르면 회계법인과 감사반에 한하여 외감법에 따른 감사가 허용되어 있다.<sup>6)</sup> 그러나 감사반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 등 현실적인 한계로 회계법인에 비하여 감사업무에 외감법상 제한을 두고 있다.<sup>7)</sup>

5) 참고로 2001년에 상장되어 있는 자산규모 70억 이상 100억 미만인 42개 기업의 평균 감사보수는 13,400,000원에 불과하였다.  
6) 감사반은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되며 등록을 위해서는 감사반의 운영규약, 감사반의 구성동의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등록된 감사반은 모두 281개이며 소속된 공인회계사수는 모두 1,271명이다.  
7) 첫째, 감사반은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둘째, 감사반은 결합재무제표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셋째, 감사반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의 회사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00억원(직전 사업연도에 감사한 연결재무제표를 계속 감사하

이와 같이 외감법은 감사반에게 감사를 허용하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어 감사반의 수입에서 감사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구체적으로 2004년 3월 31일 기준으로 287개 감사반에 속해있는 공인회계사는 1,257명으로 72개 회계법인에 속해있는 공인회계사 3,880명의 32.4%에 상당하는 공인회계사가 감사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감사반의 총 감사수입은 313억으로 회계법인 전체 감사수입 3,985억원의 7.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감사반과 회계법인의 수입에서 감사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는 경우 더욱 명확해진다. 즉 2004년 총수입에서 감사관련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면 감사반은 8.5%이나 회계법인의 경우 44.8%로 회계법인은 주수입이 감사수수료인 반면 감사반에서는 부수적인 수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 1인당 감사수입에 있어서도 감사반의 경우 24백만에 불과하였으나, 회계법인의 경우 102백만원으로 감사반의 4 배를 넘는 수입을 얻고 있어 감사반에 속해있는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 감사수입은 부수입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업무수입 비중이외에 감사반은 조직형태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회계법인과 달리 감사반의 경우 개인 공인회계사들이 평소에는 각자의 일에 종사하다 연말 감사시즌에만 모여 각자 담당할 일만을 수행하는 체제로 운영되다보니 일관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감사반의 경우 법인과는 달리 조직을 이루지 않고 있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 소비자인 기업과 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 책임소재를 따질 주체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사반의 경우 회계법인과는 달리 감사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감사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원창(1989)은 감사인 개인특성과 조직특성에 따라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조사하여 회계법인의 총수입 중 감사수입의 비중이 작은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인한 감리대상회사가 많고 감리지적 빈도도 기대빈도보다 많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론해 보면 감사반의 경우 총수입에서 감사로 인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고 조직구조상 한계로 인하여 감사품질이 회계법인에 비하여 떨어진다고 추론되어 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감사반은 회계법인보다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이 낮다.

가설 2: 회계법인은 자기의 주력 감사시장에서 타 회계법인보다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이 높다.

가설 2.1: 국내중소회계법인은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하여 Big4보다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설 2.2: Big4는 대기업에 대하여 국내중소회계법인보다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는 경우에는 1,000억원)이상의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이 될 수 없다. 외감법상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감사반은 자기와 종속회사 자산총액이 500억 이상인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넷째, 감사반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시 감사인이 될 수 없다.

## IV. 연구방법

### 4.1 표본기업 선정

본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 기업 중 금융업,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 관리종목 및 필요한 재무자료가 없는 기업을 제외하고 총 11,533 기업연도 표본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기간을 1995년 이후부터로 한 것은 그 이전 기간의 경우 현금흐름표가 공시되지 않아 재량적 발생액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sup>8)</sup> 또한 관리종목으로 분류된 기업은 기업마다 편입사유에 있어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며 회계정보 역시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표본선정과정에서 제외하였다.<sup>9)</sup> 금융업종은 재무자료를 이용한 일반적인 연구에서와 같이 재무제표의 구성항목과 그 의미가 제조업과는 차이가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재량적 발생액 추정시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의 중분류기준에 의하여 유사업종으로 통합한 후에 산업별 및 연도별로 그 표본수가 10개 미만인 업종은 모두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총 11,598개의 기업연도표본을 추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감사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감사미실시인 경우

분석에 필요한 감사인의 구분이 어려워 이에 해당하는 63개 표본을 제외시켜 최종분석을 위한 11,533개의 기업-연도표본을 확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표본기업에 대한 연도별 또는 자산구간별 감사인의 분포는 앞서 설명한 <표 3>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4>는 기업의 총자산 규모를 500억 미만에서부터 1조 이상까지로 크게 5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표본기업이 각 자산구간에 분포되어 있는 현황과 동시에 각 자산구간별 기업의 감사인 분포를 나타낸다. 우선 행비율로 살펴보면 전체 11,533개의 기업연도표본 중 46.78%에 해당하는 5,395개의 기업들이 총자산 500억 미만에 해당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상장·코스닥 등 록기업들의 절반 정도가 총자산이 500억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자산규모가 5,000억 이상인 기업의 수는 총 1,299개로 전체 표본의 11.26%정도였다. 기업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단지 기업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상장된 기업일지라도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기업들이 비교적 작은 자산구간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품질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회계법인은 외국회계법인과의 제휴여부와 소속 공인회계사수에 따라 3개로 구분하고 여기에 성격이 다른 감사반을 포함시켜 감사인을 총 4개로 구분하였다.<sup>10)</sup> 특히, 국내회계법인은 소속공인회계사 50인을 기준으로 국내대

8) 1993년 12월 31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과 이에 따른 1994년 4월 30일 시행령개정으로 기업이 작성공시해야 하는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혹은 결손금처리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로 결정되었다.

9) 관리종목 지정기준은 크게 회계처리기준위반, 사업보고서등 미제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 또는 반기검토의견의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자본잠식, 영업활동정지, 지배구조미달, 거래량미달, 추가수준미달, 시가총액미달 등 크게 12가지 정도의 사유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Dechow et al.(1995)과 Subramanyam(1996)은 극단적인 기업성적을 보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Jones 모형은 일정한 편의를 가진다고 보고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종목 기업을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10)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회계법인의 수는 총81개로 파악된다. 이 중 감사인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회계법인은 7개이고, 감사인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회계법인은 4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Big4를 명성이 높은 외국제휴 대형회계법인으로 정의하며 이는 연구에 따라 Big5, Big6, Big8 등으로 표현된다. 국내대형회계법인(Local-Big)

형회계법인(Local-Big)과 국내소형회계법인(Local-Small)으로 구분한 것은 최근 개정된 지정감사인 요건 중 소속공인회계사수에 따라 지정대상 회사의 규모를 달리 적용한 규정에 따랐다.<sup>11)</sup> <표 4>의 열비율은 이들 감사인이 각 자산구간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전체 11,533개의 기업연도표본을 기준으로 할 때 Big4회계법인은 5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Local-Big 20.4%, Local-Small 18.3%, 감사반 등이 4.1%순이었다. 이는 상장·코스닥 시장에서 각 감사인이 차지하는 시장지배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4.2 재량적 발생액의 추정

경영자의 추정과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 재량적 발생액은 재무제표에 공시되지 않으므로 추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재량적 발생액은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오차의 문제를 피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모형이 제시되어 왔다.

Dechow 등(1995)은 Jones 모형에서 매출액이 이익조정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완화하여 재량적 발생액의 계산시 매출액의 변화에서 신용매출 변화분을 차감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정-Jones 모형(Dechow et al. 1995)을 이용하여 재량적 발생액(이후 DACC)을 연도별·산업별로 추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모형은 다음 식(1)과 같다. 재량적 발생액은 식(1)의 회귀모형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잔차항을 의미한다.<sup>12)</sup>

수정 Jones 모형:

$$\frac{TACC_{i,t}}{A_{i,t-1}} = \alpha_0 \frac{1}{A_{i,t-1}} + \alpha_1 \frac{\Delta Rev_{i,t} - \Delta AR_{i,t}}{A_{i,t-1}} + \alpha_2 \frac{PPE_{i,t}}{A_{i,t-1}} + \eta_{i,t} \quad (1)$$

$TACC_{i,t}$  : i기업의 t기 총발생액

$\Delta REV_{i,t}$  : i기업의 t기 매출액의 증감

$\Delta AR_{i,t}$  : i기업의 t기 매출채권의 증감

$PPE_{i,t}$  : i기업의 t기 상각대상유형자산(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제외)

$A_{i,t-1}$  : i기업의 t-1기 자산총계

Dechow et al.(1995)은 이익조정에 대한 검증력에 있어 이 모형이 가장 우수하다고 주장한 반면, 극단적인 성과를 보고한 기업에서는 재량적 발생을 Jones 모형이나 수정Jones모형에 의해서 추정할 경우 잘못된 추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Big4와 Non-Big4의 감사품질 차이를 규명한 많은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에 대한 국내연구의 일관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에서 일반적으

은 매년 회계법인의 3월말 현재 사업보고서상의 등록공인회계사 수가 50인 이상인 회계법인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은 대주, 삼경, 삼덕, 신우, 신한, 우리, 화인경영으로 총 7개의 회계법인이었으며, 국내소형회계법인(Local-Small)은 Big4와 국내대형회계법인(Local-Big)을 제외한 등록공인회계사 수가 50인 미만인 회계법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사반을 포함하여 감사인을 크게 4개로 구분하였다.

11) <표 3>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III. 가설설정에서 제시하여, 본 단락에서는 이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IV. 연구방법에서는 표본의 선정과정 및 감사인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12) 식 (1)에서 좌변의 총발생액 중 연도별·산업별로 추정된 우변의 비재량적 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인 잔차항이 재량적 발생액이다.

로 사용한 수정 Jones모형을 이용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 발생액 추정 시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의 중분류기준에 의한 동일업종 또는 유사업종에 속한 기업의 수가 10개 미만인 기업을 제외시켰다. 유사업종을 통합한 것은 재량적 발생액을 산업별, 연도별 횡단면 분석에 의해 추정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의 관찰치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산업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산업으로 통합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임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를 모두 제외시켰다. 즉 연도별 중분류기준에 의해 구분된 산업상의 표본이 10개미만으로 다른 산업으로의 통합

이 어려워 제외한 산업은 농업, 광업, 담배제조업,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전기·가스업, 통신업, 부동산업, 영화방송관련업, 교육서비스업, 청소관련 서비스업이었다.

〈표 6〉은 수정 Jones모형 추정을 위한 표본기업의 연도별·산업별 분포를 나타낸다. 총 14개 산업으로 구분되는 표본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업종은 전기, 정밀기계 등 제조업이었으며, 그 다음이 석유화학관련 제조업이었다. 반면 운송업은 연도별로 14개에서 16개 기업으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6〉 표본기업의 산업-연도 분포

산업 <sup>주1)</sup>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어업, 음식료품	38	52	50	51	54	58	59	59	59	60	61	601
섬유의복, 가죽신발	31	46	49	51	51	54	57	60	60	60	60	579
목재, 종이, 가구 등	24	42	44	44	45	55	56	58	59	59	59	545
석유화학, 플라스틱	93	135	134	144	147	163	168	175	179	182	184	1704
비금속광물	25	30	29	28	30	31	32	32	32	33	34	336
1차금속	41	61	59	59	63	63	64	64	65	66	67	672
조립금속	19	32	31	32	32	35	35	36	37	37	37	363
기계 및 장비제조	26	47	47	58	64	87	97	103	108	111	115	863
전기, 통신장비 등	78	132	137	149	162	260	295	312	326	330	330	2511
자동차 제조등	43	57	58	57	59	65	68	68	70	71	71	687
종합건설업 등	40	49	49	47	51	52	53	50	50	48	47	536
도소매업	39	59	58	62	61	81	83	85	87	85	84	784
운송업	14	15	15	15	16	15	15	16	16	16	16	169
정보처리관련업 등	23	37	43	53	60	131	157	165	169	173	172	1183
전체	534	794	803	850	895	1150	1239	1283	1317	1331	1337	11533

주1) 한신평(주) KIS-Value의 중분류기준에 따른 것이며, 비재량적 발생액의 기대치를 계산하기 위한 회귀계수를 추정할 때 유사 산업구분으로 통합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하였음.

### 4.3 연구모형

#### 4.3.1 감사품질과 재량적발생의 크기: 'Big4'와 'Non-Big4'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감사품질과 재량적 발생의 크기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감사품을 'Big4'와 'Non-Big4'(Local-Big & Local-Small & 감사반)로 이원화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에 의한 다변량분석결과가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지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통해 감사품질이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모형설계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DACC}_t = & a_0 + a_1\text{Big4}_t + a_2\text{LASS}_t \\ & + a_3\text{LEV}_t + a_4\text{OCF}_t + a_5\text{ROA}_t \\ & + a_6\text{ABSTAC}_t + a_7\text{LOSS}_t + \epsilon_t \quad (2) \end{aligned}$$

모형 (2)에서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DACC : 수정 Jones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

Big4 : 외국계회계법인(Big4)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LASS : 총자산의 자연대수값

LEV : 부채/총자산

OCF : 영업현금흐름/전년도 총자산

ROA : 순이익/전년도 총자산

ABSTAC: 총발생액의 절대값/전년도 총자산

LOSS : 당기순손실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DACC는 수정 Jones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이다. 만일 Big4의 감사품질이 가장 우수하다면  $a_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이다. 실험변수인 Big4외에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포

함하였다. LASS는 생략된 다양한 변수들의 대응 변수가 될 수 있으며(Becker et al. 1998), LEV는 부채비율로서 이익조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 바 있다. Sweeney(1994)는 부채계약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재량적 발생액을 통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OCF(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는 현금흐름과 재량적 발생액간에 유의적인 부(-)의 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들(Dechow et al. 1995, Becker et al. 1998, DeFond and Subramanyam 1998)에 기초하여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ROA(순이익/전년도 총자산)는 기업의 자산수익률이 낮을 경우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높게 평가하여 더 보수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것이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이용하였다. 또한 재량적 발생액과 총발생액의 절대값 사이에는 음(-)의 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Becker et al. 1998)가 보고되어 ABSTAC(총발생액의 절대값)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LOSS는 적자기업이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Burgstaher and Dichev 1997) 이를 통제하기 위해 추가하였다.

#### 4.3.2 감사품질과 재량적발생의 크기: 'Big4', 'Local-Big', 'Local-Small', '감사반 등'

재량적 발생액이 감사품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한다. 앞서 제시한 모형을 바탕으로 감사품을 'Big4', 'Local-Big', 'Local-Small', '감사반 등'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감사품질과 재량적 발생의 크기에 대한 분석은 두 가지 형태로 실시한다. 첫째는 감사서비스 수요자인 기업의 규모를 고

려하지 않고 전체 기업연도표본을 대상으로 감사인간의 재량적 발생액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에 의하여 검증한다(가설1). 두 번째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최적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감사인의 규모 등이 달라진다는 것을 분석하기 위하여 피감사기업의 기업규모를 구분한 후 단일변량분석과 다변량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가설2의 자산으로 구분된 감사시장에서 각 감사인의 주력감사시장에서 타감사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감사품질이 더 높은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감사인의 형태나 규모 등에 따라 감사인의 주력 시장이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경제학적으로 볼 때 자기의 주력 시장에서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가정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단일변량분석에서는 표본을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를 5단계로 구분한 후 각각의 감사시장에서 네 그룹으로 구분된 감사인간의 재량적 발생액의 차이를 비교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변량분석은 표본편의(selection bias)로 인한 검증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재량적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변량분석을 실시한다.

$$\begin{aligned} \text{DACC}_t = & a_0 + a_1\text{LB}_t + a_2\text{LS}_t + a_3\text{IG}_t \\ & + a_4\text{LASS}_t + a_5\text{LEV}_t + a_6\text{OCF}_t \\ & + a_7\text{ROA}_t + a_8\text{ABSTAC}_t \\ & + a_9\text{LOSS}_t + \varepsilon_t \end{aligned} \quad (3)$$

LB : 국내대형회계법인이면(Local-Big)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LS : 국내소형회계법인(Local-Small)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IG : 감사반 등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V. 실증분석결과

### 5.1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모형에서 사용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다음 <표 7>과 <표 8>에 제시하고 있다. <표 7>에서 11,533개 기업연도표본의 재량적 발생액에 대한 평균값과 중앙값은 각각 -0.012와 -0.006으로 음(-)의 재량적 발생액을 나타내고 있다. 총발생에 대한 평균값과 중앙값도 각각 -0.018과 -0.024로 음(-)의 총발생액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표 8>에서 재량적 발생액(DACC)은 부채비율(LEV), 영업현금흐름(OCF), 총발생액의 절대값(ABSTAC), 손실여부(LOSS)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자산규모(LASS) 및 ROA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DACC와 Big4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이는 감사품질과 재량적 발생액과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나타낸다. Big4와 다른 독립변수들간의 경우 LASS, OCF, ROA와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고, LEV, ABSTAC, LOSS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감사품질이 높은 Big4가 감사한 기업의 영업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그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보여준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와 유사한 행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실험변수인 Big4가 일부 다른 변수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VIF값을 계산하고 그

〈표 7〉 기술통계

변수명	N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DACC	11,533	-0.012	-0.006	0.185	-2.685	2.344
SIZE(단위:천원)	11,533	384,277,020	56,049,345	1,642,073,979	628,068	50,538,770,000
LEV	11,533	0.532	0.521	0.460	0.009	26.477
OCF	11,533	0.063	0.055	0.239	-7.726	8.520
ROA	11,533	0.044	0.037	0.240	-7.685	10.092
TACC	11,533	-0.018	-0.024	0.221	-3.748	9.582
ABSTAC	11,533	0.111	0.067	0.192	0.000	9.582
LOSS	11,533	0.206	0.000	0.404	0.000	1.000
BIG4	11,533	0.571	1.000	0.495	0.000	1.000
LB	11,533	0.204	0.000	0.403	0.000	1.000
LS	11,533	0.183	0.000	0.387	0.000	1.000
IG	11,533	0.041	0.000	0.199	0.000	1.000

주1) 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DACC: 수정 Jones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

SIZE : 총자산

LEV: 부채/총자산

OCF: 영업현금흐름/전년도 총자산

ROA: 순이익/전년도 총자산

ABSTAC: 총발생액의 절대값/전년도 총자산

LOSS: 당기순손실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BIG4: 외국재휴회계법인(BIG4)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LB: 국내대형회계법인이면(Local-Big)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LS: 국내소형회계법인(Local-Small)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IG: 감사반 등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결과를 회귀분석결과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VIF 값은 낮은 수준이어서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회귀계수의 왜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5.2 단일변량분석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가 기업규모에 따른 각각의

감사시장에서 감사품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결과를 〈표 9〉에 제시한다. 총 4개로 구분된 감사인 그룹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ukey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sup>13)</sup> 기업규모에 따른 감사인 그룹 간 재량적 발생액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표본의 약 42%정도가 분포하고 있는 총자산 500억 이상 5,000억 미만

13) 각 기업규모별 감사인표본이 50개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기간이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이므로 감사인 그룹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각 기업규모별로 매년도 해당감사인그룹에 최소 5개 이상의 표본을 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표 8〉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피어슨 상관관계(관찰수=11,533)

	DACC	Big4	LASS	LEV	OCF	ROA	ABSTAC
Big4	0.004 (0.685)						
LASS	0.039 (0.000)	0.245 (0.000)					
LEV	-0.178 (0.000)	0.011 (0.247)	0.069 (0.000)				
OCF	-0.324 (0.000)	0.030 (0.001)	0.010 (0.277)	-0.058 (0.000)			
ROA	0.361 (0.000)	0.021 (0.023)	-0.048 (0.000)	-0.220 (0.000)	0.574 (0.000)		
ABSTAC	-0.036 (0.000)	-0.011 (0.226)	-0.135 (0.000)	0.130 (0.000)	-0.230 (0.000)	0.044 (0.000)	
LOSS	-0.257 (0.000)	0.005 (0.575)	-0.034 (0.000)	0.167 (0.000)	-0.225 (0.000)	-0.443 (0.000)	0.118 (0.000)

주1) 첫 번째 숫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괄호안의 숫치는 p-값을 나타낸다.

주2) 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DACC: 수정 Jones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

LASS: 총자산의 자연대수값

LEV: 부채/총자산

OCF: 영업현금흐름/전년도 총자산

ROA: 순이익/전년도 총자산

ABSTAC: 총발생액의 절대값/전년도 총자산

LOSS: 당기순손실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BIG4: 외국계회계법인(BIG4)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의 구간에서는 회계법인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산규모 500억 미만의 감사시장에서 국내소형회계법인(Local-Small)과 감사반 그룹간에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5% 유의수준). 이는 감사반을 제외한 3개의 그룹으로 분류된 회계법인 간 재량적 발생액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재량적 발생액이 가장 작은 국내

소형회계법인(Local-Small)은 평균적으로 재량적 발생액이 가장 큰 감사반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자산규모 5,000억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인 그룹간의 비교에서는 Big4의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국내대형회계법인(Local-Big)과 비교하여 작게 나타나고 있다.<sup>14)</sup> 이는 대규모 상장기업의 감사시장에서 Big4

14) 5,000억 이상의 감사인그룹간 비교시에는 결국 두 개그룹의 비교에 해당하여 t-test검증결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나 그 결과값은 동일하므로 ANOVA에 의한 F-값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표 9〉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BIG4의 재량적발생액에 대한 표

〈표 9〉 기업규모별 감사인간 재량적발생액(DACC) 차이에 관한 검증

자산규모		자산규모					합계
		500억미만	500억이상 1,000억미만	1,000억이상 5,000억미만	5,000억이상 1조미만	1조이상	
Big 4	평균	-0.016	0.001	-0.010	-0.009	-0.022	-0.012
	표준편차	0.233	0.146	0.148	0.117	0.114	0.182
	관찰수	2578	1138	1787	399	688	6,590
Local-Big	평균	-0.027	0.003	-0.007	0.021	0.007	-0.013
	표준편차	0.212	0.156	0.122	0.133	0.128	0.177
	관찰수	1103	502	565	89	97	2,356
Local-Small	평균	-0.034	0.006	0.006	-	-	-0.019
	표준편차	0.229	0.179	0.140	-	-	0.207
	관찰수	1294	448	344	-	-	2,086
감사반	평균	0.003	-	-	-	-	0.007
	표준편차	0.164	-	-	-	-	0.164
	관찰수	420	-	-	-	-	420
ANOVA Test F-값		3.76**	0.16	2.04	4.63**	5.30**	2.48*
Tukey's mutiple comparison		Local-Small vs. 감사반	-	-	Big5 vs. Local-Big	Big5 vs. Local-Big	Local-Small vs. 감사반

주1) 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DACC: 수정Jones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

Big4: 외국의 Big5와 제휴한 대형회계법인으로 삼일·안건·안진·영화·삼정회계법인

Local-Big: 등록공인회계사 수가 50인 이상인 국내대형회계법인으로 대주·삼경·삼덕·신우·신한·우리·화인경영회계법인

Local-Small: 등록공인회계사 수가 50인 미만인 국내소형회계법인

감사반: 감사반, 합동회계사무소 및 개인감사인

주2) 자산규모별로 비교대상 감사인 표본이 50개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였음.

의 감사품질의 우수성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량적 발생액은 외부감사 또는 감사품질이 아닌 여러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규모별로 통제변수가 포함된 다변량모형에 의한 결과를 제시한다.

### 5.3 다변량분석

연구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채택된 표본을 이용하여 선행연구들과 같이 감사품질이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감사인을 Big4와 Non-Big4로 구

준편차 0.182를 기준으로 할 경우 Local-Big의 표준편차는 이보다 작은 0.177이며, 감사반도 0.164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Local-Small의 표준편차는 BIG4보다 큰 0.20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Local-Small의 재량적발생액이 BIG4보다 작아서 본 연구가설을 지지하게 하는 500억 미만의 자산규모에서는 Local-Small의 표준편차도 0.229로 BIG4의 0.233보다 작게 나타났습니다.

〈표 10〉 회귀분석결과 : 'BIG4' vs. 'Non-BIG4'(Local-Big & Local-Small & 감사반)

$$DACC_t = a_0 + a_1BIG4_t + a_2LASS_t + a_3LEV_t + a_4OCF_t + a_5ROA_t + a_6ABSTAC_t + a_7LOSS_t + \epsilon_t$$

변수	모형	예측부호	'BIG4' vs 'Non-BIG4'(Local-Big & Local-Small & 감사반)
절 편		?	-0.082 (-6.28)***
BIG4		-	-0.001 (-0.55)
LASS		?	0.006 (8.82)***
LEV		+	0.001 (0.09)
OCF		-	-0.694 (-121.15)***
ROA		+	0.674 (108.53)***
ABSTAC		-	-0.259 (-43.31)***
LOSS		-	-0.017 (-5.92)***
Adj. R <sup>2</sup>			62.77%
F-값			2778.24***
최대 VIF값			2.01
표본수			11,533

주1) \*/\*\*/\*\*는 각각 10%, 5% 및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양측검증).

주2) 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DACC: 수정 Jones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

BIG4: 외국재회계법인(BIG4)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LASS: 총자산의 자연대수값

LEV: 부채/총자산

OCF: 영업현금흐름/전년도 총자산

ROA: 순이익/전년도 총자산

ABSTAC: 총발생액의 절대값/전년도 총자산

LOSS: 당기순손실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주3) 최대 VIF값은 설명변수들의 VIF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10〉에 제시한다. 이는 다른 선행연구들처럼 감사인을 이원화하여 감사품질을 규명할 때 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즉, 재량적 발생액이 Big4와 Non-Big4로 구분된 감사인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Big4의 회귀계수가 음(-)의 값을 갖지만 그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들 중의 Big4의 감

사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원화시킨 감사인의 구분에 의한 감사품질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은 감사인의 구분을 좀 더 구체화하여 Non-Big4를 국내대형회계법인(Local-Big)과 소형회계법인(Local-Small), 감사반등(IG)으로 구분하여 감사품질이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표 11〉 회귀분석결과 : 'BIG4' vs 'Local-Big' vs 'Local-Small' vs '감사반'

$$DACC_t = a_0 + a_1LB_t + a_2LS_t + a_3IG_t + a_4LASS_t + a_5LEV_t + a_6OCF_t + a_7ROA_t + a_8ABSTAC_t + a_9LOSS_t + \epsilon_t$$

변수	모형	예측부호	'BIG4' vs 'Local-Big' vs 'Local-Small' vs '감사반'
절편		?	-0.087 (-6.38)***
LB		+	0.002 (0.55)
LS		+	-0.003 (-1.04)
IG		+	0.020 (3.70)***
LASS		?	0.007 (9.06)***
LEV		+	-0.001 (-0.11)
OCF		-	-0.694 (-121.22)***
ROA		+	0.674 (108.59)***
ABSTAC		-	-0.259 (-43.23)***
LOSS		-	-0.017 (-5.73)***
Adj. R <sup>2</sup>			62.81%
F-값			2165.38***
최대 VIF값			2.01
표본수			11533

주1) \*/\*\*/\*\*는 각각 10%, 5% 및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양측검증)

주2) 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DACC: 수정 Jones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

LB: 국내대형회계법인이면(Local-Big)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LS: 국내소형회계법인(Local-Small)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IG: 감사반 등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LASS: 총자산의 자연대수값

LEV: 부채/총자산

OCF: 영업현금흐름/전년도 총자산

ROA: 순이익/전년도 총자산

ABSTAC: 총발생액의 절대값/전년도 총자산

LOSS: 당기순손실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주3) 최대 VIF값은 설명변수들의 VIF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검증한 회귀분석결과이다(가설1).

재량적 발생액(DACC)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감사반등(IG)의 회귀계수는 0.020으로 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회귀식 결과는 감사인조직의 성격이나 규모가 이질적인 감사

반의 경우 회계법인에 비하여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이 낮다는 가설1을 지지한다. 이렇게 감사반의 경우 감사품질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원인은 연구가설에서 설명하였듯이 감사반의 경우 회계법인과는 달리 감사수입이

〈표 12〉 자산규모별 회귀분석 결과

$$DACC_t = a_0 + a_1LB_t + a_2LS_t + a_3IG_t + a_4LASS_t + a_5LEV_t + a_6OCF_t + a_7ROA_t + a_8ABSTAC_t + a_9LOSS_t + \varepsilon_t$$

모형 변수	예측 부호	500억 미만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5,000억 미만	5,000억 이상 1조 미만	1조 이상
절편		-0.494(-9.42)***	-0.075(-0.43)	-0.074(-1.16)	-0.719(-2.02)**	0.318(3.62)***
LB	+	-0.009(-2.01)**	0.006(1.27)	-0.002(-0.52)	0.015(1.78)*	0.018(1.87)*
LS	+	-0.011(-2.49)**	0.005(1.01)	-0.005(-1.20)	-	-
IG	+	0.017(2.48)**	-	-	-	-
LASS	?	0.032(10.30)***	0.004(0.41)	0.005(1.44)	0.035(2.00)**	-0.018(-4.41)***
LEV	+	0.001(0.46)	0.056(6.66)***	0.013(2.18)**	0.044(2.39)**	0.075(3.68)***
OCF	-	-0.727(-90.27)***	-0.716(-55.76)***	-0.929(-73.92)***	-0.895(-24.71)***	-0.444(-16.29)***
ROA	+	0.666(81.07)***	0.904(50.88)***	0.952(62.83)***	1.019(18.27)***	0.876(17.81)***
ABSTAC	-	-0.333(-40.05)***	-0.274(-19.81)***	-0.053(-3.44)***	-0.075(-1.51)	0.158(5.38)***
LOSS	-	-0.020(-4.09)***	0.013(2.29)**	-0.004(-0.92)	0.006(0.56)	-0.005(-0.48)
Adj. R <sup>2</sup>		66.85%	69.55%	72.75%	63.14%	45.73%
F-값		1209.53***	596.76***	900.45***	120.17***	95.36***
최대 VIF값		2.27	1.93	2.04	1.76	2.54
표본수		5,395	2,088	2,696	488	785

주1) \*/\*\*/\*\*는 각각 10%, 5% 및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양측검증)

주2) 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DACC: 수정 Jones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

LB: 국내대형회계법인이면(Local-Big)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LS: 국내소형회계법인(Local-Small)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IG: 감사반 등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LASS: 총자산의 자연대수값

LEV: 부채/총자산

OCF: 영업현금흐름/전년도 총자산

ROA: 순이익/전년도 총자산

ABSTAC: 총발생액의 절대값/전년도 총자산

LOSS: 당기순손실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주3) 최대 VIF값은 설명변수들의 VIF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주4) 각 자산구간에 따른 감사인별 기업표본수가 50개 미만인 표본은 제외하고 회귀분석하였다. 〈표 3〉에 기초하여 자산규모 500억 이상부터 5,000억 미만에서는 감사반(각각 39개, 16개)을 제외하였으며, 자산규모 5,000억 이상에서는 국내소형회계법인(Local-Small)을 제외하였다(5,000억 이상부터 1조 미만은 14개, 1조 이상은 12개).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감사에 큰 신경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개인 공인 회계사들이 각자의 일에 종사하다 연말 감사시즌에

만 모여 각자 담당한 감사만을 수행하는 체제로 운영되다보니 일관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회계법인과 달리 조직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인 기업과 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 책임소재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표 10〉과 〈표 11〉을 통한 DACC의 분석결과에 의한 통제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LASS의 회귀계수는 1%유의수준에서 양(+)<sup>15)</sup>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양(+)<sup>15)</sup>의 부호는 대기업의 경우 높은 정치비용 때문에 이익을 하향조정한다는 실증이론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LEV의 회귀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부채계약조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익을 상향조정한다는 계약이론(Watts and Zimmerman 1986)과 일치하지 않는다. OCF의 회귀계수는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당히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유의수준). 이는 영업현금흐름이 많은 기업일수록 이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익조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행연구(Dechow et al. 1995)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ROA의 경우엔 유의한 양(+)<sup>15)</sup>의 값을 가지며, 이는 자산수익률이 낮은 기업일수록 더 보수적인 감사절차가 수행될 것으로 예측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ABSTAC은 예측부호인 음(-)의 값으로 나타나, 선행연구(Becker et al. 1998; 최관·전성일 2005)들과의 차이가 없었다.(1%유의수준)<sup>15)</sup>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12〉에 제시한다. 이는 자산으로 구분된 감사시장에서 각 감사인들이 그들의 주력시장에서는 감사품질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자산규모 5,000억 이상의 감사시장에서는 LB(국내대형회계법인; Local-Big)의 회귀계수가 양(+)<sup>15)</sup>의 값으로 10% 유의수준을 나타냈다. 즉 대규모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사시장에서는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Big4의 감사품질이 Local-Big과 비교하여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0억 미만의 소규모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감사시장에서는 LB(국내대형회계법인; Local-Big)과 LS(국내소형회계법인; Local-Small)의 회귀계수는 Big4와 비교하여 음(-)의 값으로, IG(감사반등; Individual CPA Groups)는 양(+)<sup>15)</sup>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5% 유의수준). 자산규모 500억 이상에서 5,000억 정도의 중소기업의 감사시장에서는 Big4와 국내회계법인이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감사시장에서는 감사인간의 감사품질이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 12〉는 기업의 규모에 따른 감사시장에서 감사인들이 각각 그들의 주력시장에서 감사품질의 우월성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검증결과는 가설2와 일치한다.

〈표 12〉에서 통제변수들은 LEV를 제외하고 〈표 10〉 및 〈표 11〉과 일관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LEV의 경우 500억 이상의 기업규모에서는 모두 회귀계수값이 유의한 양(+)<sup>15)</sup>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이익을 상향조

15) LOSS와 DACC간에는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이 발견된다. 기업들이 피하고자 하는 상황은 당기순손실이며 이러한 현상은 송인만 등(2008, 2007)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량적발생액 조정을 통하여 보고이익을 음에서 양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량적 발생액을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를 통하여 Big Bath를 한 후 이후 기간 보고이익의 증가를 꾀하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해석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LOSS와 DASS간 음의 관련성은 손실을 보고한 기업이 이익을 보고한 기업보다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이는 손실을 보고한 기업의 이익조정 여지가 이익을 보고한 기업보다 낮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재량적 발생액이 낮다는 것은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할 뿐 직접적으로 이익을 낮춘다거나 big bath로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정한다는 계약이론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표본의 절반 정도(47.78%)를 차지하고 있는 자산 규모 500억 미만에서는 재량적 발생액과 부채비율 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본 연구와 다른 연구과제로 남겨둔다.<sup>16)</sup>

〈표 12〉에서 제시된 실증분석은 Big4가 Non-Big4보다 재량적 발생액이 적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던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일관성이 없었던 것은 피감사기업의 규모에 따라 우수한 감사품질을 제공하는 감사인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규모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많은 연구에서 가정하였던 Big4의 감사품질이 다른 회계법인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상장기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감사에서는 국내소형회계법인이 감사품질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500억 미만의 기업규모에서는 감사반의 피감사기업 재량적발생이 Big4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감사반을 단순히 Non-Big4에 포함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감사시장에서조차 감사품질의 차이를 규명하기 어려우며, 이것은 지금까지 감사인 규모에 따른 감사품질의 차이에 대한 결과가 일관성이 없었던 이유가 된다.

일반적으로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Big4가 기타 감사인에 비하여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높은 감사보수를 받아 명성에 맞는 감사품을 유지한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5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기업

에 비하여 기업내부의 회계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 따라서 회계기록 등이 제대로 작성 및 유지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부담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투입한 감사시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기가 어려워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높은 감사보수를 받는 Big4의 경우 감사품질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소형회계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당 보수가 낮아 대형회계법인에 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으며 소규모기업의 감사를 많이 담당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적합한 감사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입장에서 볼 때 소형회계법인의 경우 대형회계법인에 비하여 접근성이 좋아 기업에 밀착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회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Big4에 비하여 소형회계법인이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 Ⅷ. 요약 및 결론

일반적으로 감사인의 규모 등이 회계감사품질의 대응치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대응치가 실제 회계감사품질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16) 부채와 재량적발생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부채계약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익을 상향조정한다는 계약이론(Watts and Zimmerman 1986)에 따라 양(+)의 관계로 예측된다. 그러나 재량적발생과 부채간의 음(-)의 관계를 보고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Becker et al. 1998, 박종성과 이은철 2003, 최정호 2005). 최정호(2005)는 DeAngelo et al.(1994)의 해석을 인용하여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적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고 채권자와 재계약에 관한 협상에서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를 위해서 이익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Shivakumar(2000)은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이미 과거에 이익을 상향조정하였기 때문에 당기에 이익조정할 여유가 없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감사품질을 연구한 외국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Big4 감사인들과 같이 대규모의 명성이 높은 감사인들은 그렇지 않은 감사인들에 비하여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른 감사품질의 차이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Big4 감사품질의 우월성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Big4가 다른 감사인에 비하여 모든 규모의 기업에 대해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 규모는 피감사회사의 규모와 비례하여 달라지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감사인의 명성 및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의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즉,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Big4의 감사품질이 다른 감사인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감사품질의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때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품질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감사인을 외국유명회계법인과 제휴한 대형회계법인(Big4)과 기타회계법인(Non-Big4)으로 이원화하여 대형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피감사기업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우수하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감사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문제점과 이로 인한 연구방법의 한계로 감사인간의 감사품질 차이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회계법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법률을 제정하여 대형회계법

인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였다. 반면 이러한 혜택을 향유하지 못한 감사조직은 스스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대형회계법인이 가지지 못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특화된 감사서비스시장에서 자기만의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수요를 충족시켜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서비스의 공급자인 감사인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에 제한을 두어 왔으며 감사서비스의 수요자인 상장기업 역시 자산총액이 500억 미만 기업이 전체 상장기업의 46.78%를 차지할 정도로 상장기업 내에서도 다양한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감사조직이 다양한 회계서비스 수요를 가진 기업들에 대해 자기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전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질적인 감사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Big4와 기타(Non-Big4)로 구분한 후 Big4의 감사품질이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기타 감사인에 비하여 우수하다는 가정을 검증한 것은 너무 강한 가정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외국유명회계법인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대형회계법인들의 감사품질 우수성이 일관되게 증명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회계감사시장에서 공급자인 감사인과 수요자인 기업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회계감사품질이 영향을 받는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규모 등에 따라 감사인을 Big4, Local Big, Local Small, 그리고 감사반의 4집단으로 구분하고, 기업 역시 자산규모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한 후 감사인의 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감사품질이 감사 업무수행에 있어 중요한 상대방인 기업 규모에 따라 변화하는가를 규명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들과 일치된다. 첫째, 감사반의 경우 모든 규모의 기업군을 대상으

로 회계법인과 비교하여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감사품질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500억 미만의 중소 상장기업 감사시장에 있어 Local Big과 Local Small의 피감사기업 재량적 발생액은 Big4의 피감사기업 재량적 발생액에 비하여 유의하게 적어 Local Big과 Local Small이 보다 높은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5,000억 이상 1조 미만 기업과 1조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형 상장기업의 감사시장에서는 Big4의 감사품질이 다른 회계법인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규모에 따라 최적의 감사인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며, 동시에 감사인의 구분을 이원화(Big4대 Non-Big4)하여 Big4의 감사품질의 우수성을 검증하고자 했던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이 없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즉, Big4 감사품질의 우수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입증된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유의성이 없고 또는 기대와는 반대의 결과를 얻은 것은 서비스 공급자인 감사인을 이원화한 구분법이 우리나라의 감사시장 현황을 잘 나타내지 못하였으며 또한 감사서비스 수요자인 기업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각 감사인의 주력감사시장을 정확히 선정하여 그 감사품질이 최고인 기업규모를 구분할 수 있다면, 본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실증분석결과의 설명력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기업규모의 구분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 감사인의 주력감사시장을 정확히 선정하기에는 실증적으로 한계가 있어 이는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 참고문헌

- 강선민 · 황인태(2007), "외부감사가 비상장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2권 제2호, 21-59.
- 권수영 · 김문철(2001), "감사보수의 결정요인과 감사보수 체계 변화로 인한 효과분석," *회계학연구*, 제26권 제2호, 115-143.
- 김문철 · 황인태(1998), "감사의 품질차이가 전기손익수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1-26.
- 나종길 · 최 관(2003), "회계발생액과 차별적 감사수요," *회계학연구*, 제28권 제1호, 1-32.
- 박종일, 이명곤, 원형연(1999),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감사인의 감사품질분석," *회계와 감사연구*, 35, 289-319.
- 이원창(1989), "감사인특성에 따른 감사품질의 차이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9, 259-285.
- 정석우(1999), "Big 6 감사인과 Non Big 6 감사인에 대한 감리결과 비교," *회계와 감사연구*, 35, 193-217.
- 최 관 · 백원선(1998), "감사인의 유형과 감사품질: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49-75.
- 최 관 · 전성일(2005), "외환위기와 보수적 회계처리," *회계학연구*, 제30권 제3호, 215-242.
- 최정호(2005), "회계제도개선과 감사품질이 재량적 발생의 크기와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0권 제2호, 107-149.
- Becker, C. L., M. L. DeFond, J. Jiambalvo, and K. R. Subramanyam(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 1-24.
- Burgstahler, D. and I. Dichev(1997), "Earnings

- Management to Avoid Earnings Decrease and Loss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4, 99-126.
- DeAngelo, L.(1981),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 183-199.
- Dechow, P., R. Sloan, and A. Sweeney(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 193-225.
- Defond, M. and K. R. Subramanyam(1998), "Auditor changes and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5, 35-68.
- Francis, J., and J. Krishnan(1999), "Accounting Accruals and Auditor Reporting Conservatism,"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6, 135-165.
- Myers, J. N., L. A. Myers., and T. C. Omer(2003), "Exploring the Term of the Auditor-Client Relationship and the Quality of Earnings: A Case for Mandatory Auditor Rotation?," *The Accounting Review*, 78, 779-799.
- Palmrose, Z.(1986), "Audit Fees and Auditor Size: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4, 97-110.
- Palmrose, Z.(1989), "The Relation of Audit Contract Type to Audit Fees and Hours," *The Accounting Review*, 488-499.
- Shivakumar, L.(2000), "Do Firms Mislead Investors by Overstating Earnings before Seasoned Equity Offer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9, 339-371.
- Subramanyam, K.(1996), "The Pricing of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2, 249-281.
- Sweeny, A.(1994), "Debt-covenant Violation and Managers' Accounting Respons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7, 281-309.
- Teoh, S. and T. Wong(1993), "Perceived Auditor Quality and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The Accounting Review*, 68, 346-367.
- Watts, R. and J. Zimmerman(1986), *Positive Accounting Theory*: Upper Saddle River, N. J. Prentice-Hall.

## Does Outstanding Audit Quality of Big 4 Audit Firms Apply to Corporations at All Sizes?

In Tae Hwang\* · Sun Min Kang\*\* · Do Jin Jung\*\*\*

### Abstract

In general, audit firm size has widely been used as a substitute measure for audit quality.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evaluate if such measure were appropriately reflected upon the true face of audit quality. According to precedent studies on audit quality of other countries, those scholars assert that highly reputable and large scale audit corporations like Big 4 provide their clients with a higher-quality audit than other smaller audit firms. Unlike those foreign countries, outstanding audit quality of Big 4 in Korea has not consistently been exhibited according to prior studies on the differences in audit quality with respect to the size of audit corporation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isplay that Big 4 audit firms do not provide corporations at all sizes with higher audit quality than other auditors. Instead, we will positively analyze how audit firm size with high audit quality change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size of audited corporations.

There have been many direct or indirect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 auditor's reputation or size and the audit quality, but they have not yielded any satisfactory results. That is, most studies from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S have exhibited that audit quality of Big 4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others. Such differences in audit quality, however, have been not only inconsistent, but also negligible sometimes according to the domestic research.

In most precedent studies on audit quality, researchers dichotomized audit corporations as Big 4 in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ly reputable audit firms and non-Big 4, and conducted

---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Senior Researcher, Corporate Research Division,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eoul Korea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their analysis to prove their hypothesis that audit quality of large audit firms was consistently better than that of non-Big 4 regardless of the size of audited corporations. However, the above research method took the prior studies of other countries for granted without considering the reality of audit market in Korea. For this constraint in the research method, differences in audit quality among audit firms were not fairly determined. In Korea, the government has given various benefits to large audit firms by enacting laws and regulations to cultivate them. On the other hand, other audit firms without receiving such benefits have provided with their unique service, that's not possessed by the large corporations, in specialized audit service market and satisfied the market demand for their pursuit of survival and development.

In Korea, the size of audited corporations has been constrained by an auditor's size and structure. Various sizes of companies exist even among the listed corporations, the users of audit service. For instance, 46.78% of those companies have the total asset of less than 50 billion won. Thus, various audit organizations have provided their clients with their specialized service. Moreover, it is thought to be an extremely strong assumption to classify the audit corporations into Big 4 and non-Big 4 and assert that audit quality of the former was proven to be higher than that of the latter for corporations at all levels without considering such aforementioned heterogeneous audit service market.

Therefore, this research is to find reasons why the audit quality of large audit firms in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ly reputable audit corporations is not proven to be consistent. Moreover, we will attempt to figure out if audit quality is affected by the correlation between an audit firm as the auditor in the audit service market and an audited corporation as a user. Upon specifically categorizing the audit corporations into Big 4, Local Big, Local Small and audit team and dividing corporations into five categories based on their total asset, we examined if selective audit quality according to audit firm size changed depending on the size of an audited corporation. In other word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ositively analyze that audit firm size should change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size of an audited corporation to offer the most optimal service. In order to investigate this matter, we performed analysis using discretionary accruals. We utilized discretionary accruals as the measure to indicate audit quality in this research to examine if such quality improved with respect to the increase in audit firm size.

We yielded results that corresponded to our hypothesis. First, audit team's audit quality is low for corporations at all levels since discretionary accruals of the audited corporations

were significantly greater than other audit corporations. Second, client corporations in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arket with the asset of 50 billion won or less of Local Big and Local Small generate significantly less discretionary accruals than those of Big 4. Thus, Local Big and Local Small provide the clients in this category with higher quality audit than Big 4. Third, audit quality of Big 4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 audit corporations for those corporations with the total asset of 500 billion to 1 trillion won and large corporations with more than 1 trillion won in the total asset.

Therefor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mplies that the most optimal audit firm changes based on the size of audited corporations. Moreover, such result may explain why the precedent studies could not yield consistent results while dichotomizing the audited corporations into Big 4 and non-Big 4 at the same time. Namely, the reason for insignificant or contradicting results from those studies is that the dichotomized classification did not reflect on the reality of our audit service market well. In addition, they did not consider how those corporations as the users of audit service might have influenced the audit quality.

Key words: the size of audited corporations, audit firm size, audit quality, Big 4, discretionary accruals